

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

○ 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○ 서면심의 결과

번호	직위	성명	의견 내용		비고
			가	부	
1	의장	이종혁	○		
2	의원	최공집	○		
3	의원	김성철	○		
4	의원	염현주	○		
5	의원	정대근	○		
6	의원	홍영미	○		
7	의원	하명옥	○		
8	의원	김기철	○		
9	의원	강혜윤	○		
10	의원	이정현	○		
11	의원	윤정문			불참
12	의원	임승수			불참
13	의원	윤예림			불참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✓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1.

성명 이 종 호 (인) (인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
- 주요 개정내용

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○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0.

성명 최정집 (학부위원장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제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제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0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08 . .

성명 김성철

(김성철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
- 주요 개정내용

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○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0.

성명 염현주 (인 또는 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○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0.

성명

정 대 근

(인  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제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제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☐	☐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08 . 19 .

성명

홍 영 미



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
- 주요 개정내용

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✓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 . 19 .

성명 하명익 (인 또는 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사항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김기철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. .

성명 김기철 (인장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사항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☒	☐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 . .

성명 강혜원 (인 또는 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심의서

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심의안건 :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

- 개정사유 :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하고, 학생의 다전공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이론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사항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
- 주요 개정내용
 - ☐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와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을 명시(제4조제5항, 별표2-2)
 - ☐ 비정년계열의 책임 교수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(제12조)
 - ☐ 학생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내지 18학점에서 18학점 내지 21학점으로 조정(제52조)
 - ☐ 졸업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학점 체계를 삭제(제52조제2항)
 - ☐ 졸업학점 체계 적용 대상학과에서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폐과 명칭 삭제(제63조제1항)
 - ☐ 대학원 수업연한의 미비점 보완(제79조제1항)

☐ 심의 결과

심의결과	가	부
	이정현	

※ 심의결과 (가/부 여부)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 . 18 .

성명 이정현 (인 또는 이정현 서명)

세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귀하